

의안번호	제 365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5월 일 (제280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5월 8 일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5
----------	-----

발의연월일 : 2009년 5월 8 일

발 의 자 : 박영웅 · 이영복 · 박종갑 ·
권광택 · 심홍섭 · 민경환 ·
송은섭 (7인)

1. 제안 이유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결로 수입농수산물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업인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농수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근거 마련(안 제 6 ~ 안 제9조)

- 마.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장 규정(안 제10조)
- 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협의를 위한 충청북도농수산물수출
촉진협의회의 운영(안 제11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7호에서 정의한 농산물과 식품, 「수산어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에서 정한 농산물과 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물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

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 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의 운영)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시책 협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그 기능 등을 대행하게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사항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60조(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

- 비료·호료(호료)·유지(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